

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01. 7.

제 출 자 : 목 포 시 장

1. 제안이유

2000. 10. 20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2. 주요 골자

가. 공공시설의 위탁관리(안 제5조)

- 허가시 허가범위, 허가기간, 연간사용료, 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.
-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 가능.

나. 목포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(안 제7조)

- 심의추가
 - 공정이 50%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장사업.
 - 행정·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
- 심의사항생략
 -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취득·처분.
 - 600㎡이하(대장가액 1천만원이하 재산)의 행정·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

다.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부·사용료적용확대(안 제23조)

- 수도권 공장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 이전시
- 종업원 100인이상 고용 또는 원자재의 50%이상 관내조달공장 신축시

라. 주거용 사유건물 점유토지 대부료 산출방법(안 제25조)

-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해 산출

마.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대부기준(안 제25조의2)

- 재산의 활용을 위해 사용료·대부료 보다 유리할 때
- 인근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할 때

바. 대부료 연체 요율 감면(안 제28조)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연체시 연체 이자 감면

사. 변상금 부과에 앞선 청문제도 도입(안 제28조의2)

-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발부
 - 이의가 있는 점유자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35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제92조의2, 제95조
-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

6. 관련부서의견 : 해당없음

7. 예산상황 : 해당없음

8. 입법예고결과

- 기간 : 2001. 5. 14 ~ 6. 4
- 결과 : 의견없음

9.사전협의사항 : 해당없음

10. 기타참고사항 : 전남도 회계13330-967(2001. 4. 6)→개정조례안 표준안 시달